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25. 6.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4)

□ 존경하는 이병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에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주장 신고는 고작 793건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 사례는 불과 1건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결함 증명을 통한

인증은 물론 실질적인 입증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규정과,

급발진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구축,

그리고 기록장치 기록 데이터 기반의 급발진의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 이에 안 제2조제3호의 경우,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 안 제4조의제2항의 경우,  
급발진의심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 또한,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기록장치 시범·분석은 물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 안 제9조의 경우,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감소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법인, 단체 등의 자문은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있어  
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 그리고 안 제10조는  
급발진의심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과의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